

圖書館學教育과 圖書館法 改正方向

權 起 遠

<成大圖書館學科教授>

I. 도서관학 교육의 사적측면

1946년 국립중앙도서관내에 설치된 「조선도서관학교」의 교육은 우리나라 도서관학교육의 시작으로써 그 의의가 매우 크다. 그후 보다 체계적이고 실제적인 서구의 도서관학 교육제도가 국내에 도입된 1957년은 우리나라 도서관 발전의 초석이 놓여진 시점으로 볼 수 있다. 1950년대에 학과가 설치된 연세대학교·이화여자대학교, 1960년대에 중앙대학교·성균관대학교, 1970년대 경북대학교를 서두로 1980년대에 와서 전남·북대학교 등 전국대학교에 설치된 학교수만도 34개나 되며 대학원석사과정은 1957년에 연세대학교, 1959년에 이화여자대학교, 1971년엔 성균관대학교 등 10여개교가 신설되었고, 박사과정은 1974년 성균관대학교를 필두로 연세대학교, 중앙대학교에 신설되어 인재를 배출하고 있다.

한편 전문대학은 1970년에 부산여자전문학교를 필두로하여 10개교에 신설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70~1980년대는 도서관학과가 설립된 전성기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정보와 사회의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기인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대학의 교육에 있어서 수요와 공급의 측면에서 일견해 볼 때 대부분의 타학문분야와 유사하게 그 균형을 잃고 있음은 목과할 수 없는 과제라고 생각이 된다.

1963년 도서관법이 우리나라 최초로 통과 공포된 후 도서관발전의 초기에 당면한 제반적인 과제들을 해결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제반유형의 도서관발전에 기여한 바는 매우 크다.

도서관법의 공포 후 1975년부터 도서관법개정에 대한 운동이 시작된지 올해로 11년이나 경과되었으나 그간 1976년(1차), 1979(2차), 1981(3차), 1983년(4차)의 개정안이 마련되었고 금년에 와서 5차 개정작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금번 도서관협회가 주관하는 전국도서관대회에 이를 주제로 택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 본다.

매스컴의 물결과 함께 불어 닥친 도서관법의 개정이 국가의 헌법개정의 대과제 그늘 아래서 과연 어떻게 전개될지 걱정이 앞서지만 금번 대회를 통해 전국도서관인의 응집된

견해를 보다 적극적인 방법모색으로 개정안의 전격적인 성안과 통과를 기대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대전제하에 30여년 도서관학 교육에 관한 법적인 사항을 분석, 조사하여 전국적으로 연간 약2000여명의 많은 사서를 대량으로 배출하는 사서직 교육의 새로운 방안을 개정안에 적용할 때 고려되었으면 매우 바람직하리라고 보는 견해를 피력한다.

II. 도서관학 교육기관의 유형과 상황

1. 국립중앙도서관

1946년 4월에 국립중앙도서관내에 부설된 「조선도서관학교」의 사서교육이 시작되어 1950년 정지될 때까지 1년간의 강습기간으로 5회 졸업생을 배출하였으며, 1967년에 와서 교육기간의 1년 소요를 긴박한 도서관 전문직원이 수요에 적절히 공급해 주기 위해 1963년 공포된 도서관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2~3개월로 또는 320시간 교육을 실시하여 정사서와 준사서 자격을 수여하는 교육을 하여 왔으며 최근에는 정사서과정과 준사서과정을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다. 연간 약50여명의 수료자에게 자격증을 발행하여 1985년 현재 정사서 363명, 준사서 1,546명을 배출하였다.

2. 한국사서교육원

1965년 문교부로부터 도서관학 강습기관으로 인가를 받아 현재 정사서, 사서교사, 준사서의 3개 과정을 1년간 34학점, 544시간으로 각 과정의 교육을 전공필수, 전공선택으로 구분하여 교육시키고 있다. 강사진은 대부분이 도서관학과 교수 및 일선도서관의 중진 관리자 및 대학원 석사학위수료자 이상으로 강의를 하고 있다.

정사서와 사서교사는 학부의 전공영역의 토대위에 도서관학을 이수하고 있어 정보화 사회에서 요구되는 주제적인 배경의 취약점을 해소할 수 있는 잇점이 있으며 연간 200여명(정사서, 사서교사 각 60명, 준사서 80여명)을 배출하고 있다.

3. 전문대학 도서관과

1970년 부산여자전문대학(당시엔 부산여자전문학교)에 도서관과가 설립되었고, 그뒤 1972년 승의여자전문대학(당시엔 승의여자전문학교) 등 10여개 교육기관에서 준사서 자격 및 실기교사자격증을 수여하며 연간 약 1000여명이 배출되고 있다

4. 대학도서관학과

1957년 최초로 설립된 연세대학교 등 전국 4년제 34개 대학도서관학과에서 연간 약 1,000여명이 자격증을 수여 받고 있다.

강원도와 제주도를 제외한 각도에 학과가 설치되어 있으며 특히 서울, 대구, 부산의 3개 도시에 전체의 3분의 2이상이 분포되어 있다.

5. 대학원 도서관학과

연세대, 이대, 성대, 중대, 경북대, 청주대, 숙대, 상명여대 등의 대학원에 석사과정이 개설되어 고급인력을 양성하고 있으며 박사과정으로는 성대, 연대, 중대에서 최고급인력을 교육시키고 있다.

교육대학원은 1971년 연세대, 1973년 이화여대에 설치되었으나 폐파되었고 그 후 1982년 한양대에서 사서교육전공과정(이)이 개설되어 석사학위를 주며 이들에게 사서교사자격증을 수여하고 있다.

III. 도서관학교육의 방향과 법개정

앞에서 교육의 과정을 간단히 살펴본 결과 한해에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받는 수는 전국적으로 정사서 약 1000여명, 준사서 1000여명, 사서교사 200여명(사서교사는 정사서와 함께 이중 수여자가 거의 대부분임) 등으로 약 2,000여명에 이르고 있다. 1950년대, 1960년대와는 달리 1970년대 중반부터 도서관현장에서 전문직의 수요를 초과하는 공급과잉의 교육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현행도서관법의 허점이 매우 많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그간 배출된 전문직인 사서가 현장에서 충분히 대우를 받거나 또는 전문직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인한 제반적인 난제가 아직도 여러곳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도서관은 모든 사회의 각 시대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교육, 문화 등의 중심기관으로서 온갖 혜택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직의 성장을 쉽사리 인정하지 않거나 도서관을 운영 관리하는 전문직 업무를 아무나 할 수 있는 영역으로 오판하고 있는 이들에게 도서관 전문인의 한 사람으로 이에 대한 대처를 강구하기 위해 현행 도서관법과 그 시행령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 기존 도서관법에 의한 도서관학 교육의 문제점

현행의 도서관법은 우리나라 도서관발전에 초석이 될 수 있었던 초기의 법에 적합하였으며, 이 법과 이 시행령은 적어도 공포하여 법으로 효력이 발생한지 최소한 10년 이내에 개정되었어야 했던 무기력한 법으로 그 시기를 잃은 것은 우리나라 도서관계의 발전에 부분적으로 큰 저해요인을 야기시켰다고 볼 수 있다.

도서관학 교육을 시행해 나가는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 현행법의 문제점을 열거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 국립중앙도서관의 사서직 교육

도서관법시행령(1969년 11월 5일 대통령령 4191호, 1977년 6월 2일 대통령령 8583호) 제5조 “도서관 업무의 강습”에 대해 “국립중앙도서관은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도서관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한 교양강습실시의 요청이 있거나 도서관법 17조 5항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업무에 관한 지도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강습을 실시할 수 있다”는 항목은 재고되어야 할 필수적인 귀절이다. 이제는 정규적인 사서직 교육기관의 수적인 증가로 인해 전문직교육을 충분히 전개시킬 수 있으며 또한 2~3개월의 최단기, 320시간의 짧은 시간 교육으로 오는 자격증의 남발과 전문직의 약화 등의 사서직교육의 취약점을 안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으며, 근대적 의미의 도서관학교육이 이땅에 도입된지 30여년이 되는 시점에서 국립중앙도서관은 사서직 교육에 대해 조속한 시일안에 전문적인 정규교육기관에 일임해야만 자격증 남발로 인해 오는 전문직의 질적수준의 격하를 가

저오는 시행착오를 말고 도서관인의 권익옹호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2) 정사서 및 준사서의 자격취득조건

a) 정사서

현행법시행령 4조 2항에 정사서가 될 수 있는 항목에 “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도서관학에 관한 학점을 20학점 이상 취득하거나 도서관학에 관한 강습을 320시간 이수한 자”는 학부 4년간의 전공학점 66~75학점에 비교해 볼 때 20학점은 너무도 부족하며 이 기준에 따라 타학과 출신이 대학원에서 24학점의 학점과 학부에서 12학점 취득으로 정사서 자격을 얻게 된다는 모순을 가져오게 된다. 3학점제도의 12개 과목이수로 가능하다는 해석이 되는 것이다.

또한 준사서자격증 소지자가 3년 이상 종사자로 10학점 이상 또는 160시간 이수한자도 현실적으로 자격증 수여에 있어서 정사서자격을 수여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b) 준사서

도서관법시행령 4조3항1에 초급대학(현재는 전문대학) 또는 동등 이상 학력자는 15학점 또는 240시간을 이수한 자로 정해진 것도 현행 준사서자격증을 수여하는 정규교육기관과의 상황에서 볼 때 비교도 되지 않는다.

2. 도서관법 개정안(81년 3차)과 도서관학 교육방향

1) 국립중앙도서관

3차 개정안의 11조 5항에 의하면 “사서의 연수” 항목이 설정되어 있다. 이 항목은 전문교육기관에 일임하고 국가중앙도서관으로서의 기타기능(국가에 대한 문헌의 수집 및 보존, 국내외 서지의 작성 및 그 소개, 도서관자료의 국제교류, 정부의 각종 기록류의 보존 및 관리, 타도서관에 대하여 도서관업무에 관한 지도 및 협조)에 전념하며 각종 워크샵, 세미나, 심포지움 등을 개최하여 이른바 직원의 재교육을 시행하는 기관인 국가중앙도서관의 격조높은 각종 업무를 전개해야 한다.

2) 사서직 국가자격고시제도

성대부설 사서교육원을 비롯하여 전문대 및 대학에서 정규교육을 받은 자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서직 자격시험에 합격함으로써 자격증이 수여되는 의사, 약사와 같은 방법을 법에 규정 시행함으로써 사서직교육의 내실과 일선도서관에서의 사서의 자질을 높이며 전문직으로서의 긍지를 심는 차원있는 제도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된다.

3) 학부교육에서 부전공을 의무적으로 부과할 것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의 가장 큰 취약점이 부전공영역이 없다는 것으로 일선 도서관의 업무에 여러가지 장애요인이 있다. 부전공방법은 1964년 성대를 비롯하여 몇 대학에서 시행하였으나 그간 여러 차례 뒤바뀌면서 최근에 와서는 사서직의 경우 부전공으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대상이었던 학교도서관에서 교육할 기회를 주지 않는 실정으로 교생실습을 대치하는 기현상마저 일어나고 있다. 이는 문교부와와의 관계로 대학에서 교육을 맡고 있는 교육자들의 공동노력으로 다시 찾아야 할 매우 큰 과제이다.

4) 도서관발전위원회

도서관법 개정안 6조에 도서관발전을 펴나가기 위한 국가적 시책을 심의하기 위해 매우 바람직한 조치의 항목이다. 그 항목 중 국회도서관장을 한 위원으로 포함시켜 미국 등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국가 중앙도서관의 업무적인 구분으로 세분되어 보다 성실히 또한 적극적으로 대민봉사하는 도서관이라는 관점에서 위원회의 폭을 넓히는 것이 우리나라 도서관 발전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도서관학 전공을 하는 모든 이들에 미래 지향적인 것으로 본다.

5) 사서교사

대학에서 교직과목이수자에게 주는 사서교사자격은 부전공을 취득할 수 없는 교과과정 배정과 사서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일선사서로 근무할 경우 교육대학원에 입학하여 부전공과목을 전공으로 이수하여 학위취득 후에 일선교사로 교육을 맡고 있는 일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얼마 되지 않는 사서교사의 $T \cdot O$ 마저 교련교사로 대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서교사와 교사의 밀접한 관계로 학생들의 교육 현장을 보다 알차고 실효성 있는 교육으로 펼 수 있다는 교육의 목적을 일선교육의 책임자는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6) 자격취득조건

도서관법 시행령안(1981년 3차) 3조 4항 준사서자격취득자격을 도서관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고 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도서관학에 대한 학점을 30학점이나 취득하거나 도서관에 관한 강습을 500시간 이상인자로 함으로써 교육의 시간을 보다 충분히 실시하도록 해야한다.

또한 준사서로서 정사서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자는 6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고, 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도서관학에 관한 학점을 30학점 이상 또는 500시간 이상 도서관학에 관한 강습을 받은 자로 하여 그 질을 높여야 한다.

IV. 결 론

1963년 공포된 무기력한 도서관법을 개정해야 되겠다는 운동이 1975년 시작된지 어언 10여년이 경과된 올해에 와서 사회적인, 문화적인 모든 발전이 가져오는 도서관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가장 적합하고 알찬 새로운 도서관법으로 개정하여 모든 도서관인의 자질과 인식의 쇄신을 도서관의 현장에 풍요롭게 펼칠 수 있는 2000년대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도서관학 교육의 내실과 전문직의 승격을 최대로 하는 현재의 시급한 과제를 우리들 모두가 사심없이 협조하여 이룩하여 찬란한 우리의 문화를 마음껏 펼쳐나가야겠다.